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의15서식] <신설 2025. 2. 18.>

핵심장치등의 [] 안전성 변경신고서 []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| | |
|------|-----|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15일 |
|------|-----|----------|

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 (신청인) |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명칭 |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등록번호 |
| | 대표자명 | 생년월일(또는 법인등록번호) |
| | 전화번호 | |
| | 주소 | |

| | | |
|-------|--------|--|
| 핵심장치등 | 명칭 | |
| | 형식 | |
| | 제원관리번호 | |

| | |
|------|--|
| 변경내용 | |
|------|--|

| | |
|------------|---|
| 그 밖의 사항 |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핵심장치등에 해당 여부: [] 해당, [] 비해당 |
|------------|---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0제2항·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또는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| 첨부서류 | | 수수료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1. 변경신고 하는 경우 | 1. 변경 전·후 상세 제원 대비표 2. 변경 후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.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| 없음 |
| 2. 제원관리번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| 1. 변경 전·후 상세 제원 대비표 2. 변경 후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|

유의사항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으로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장치등을 최초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란에 '해당 없음'을 기재합니다.